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6가단5269691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

변 론 종 결 2017. 3. 15.

판 결 선 고 2017. 4.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91,82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491,82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가. 원고는 [redacted]군 C 답 826㎡ 중 D 지분 25분의 4(이하 'D 지분'이라 한다) 및 E 지분 25분의 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 5. 25. 접수 제7585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D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7. 10. 12. 접수 제16584호 및 같은 법원 2008. 4. 24. 접수 제8703호로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를 이유로 제3채무자인 [redacted]공사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000만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1.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8708).

라. 피고는 2015. 11. 3. 제3채무자인 [redacted]공사에게 D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2000년도 면허세 외 11건의 압류 통지를 하였다.

마. [redacted]공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금424호로 D에 대한 보상금 2,503,430원을 공탁하였다.

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B)에서, 피고는 2016. 10. 5. 별지1. 기재와 같이 1996년 자동차세 등 총 11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2016. 11. 4.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및 이자 합계 2,491,825원을 압류권자(지방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원고는 2006. 5. 23. 만안구청으로부터 D의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취지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별지2. 참조)를 확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채권의 우선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3호 참조).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3248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1.의 '법정기일'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지방세 채권은 각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이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교부청구한 지방세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피고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한 이상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한다.

나. 신뢰이익 침해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 안양시 만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체납사실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2007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프로그램을 쓰면서 전국 체납조회 내역이 부정확하거나 결손 내역은 조회가 안 되었고,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당시 안양시에 과세 및 체납내역이 없자 과세사실 없음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참조)의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이다. 피고의 교부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가 1996년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1996년 자동차세의 법정기일이 1996. 12. 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D 소유 F 자동차에 관하여, 1997. 3. 25. 96년 2기 자동차세에 관하여 압류등록을 마쳤고, 2008. 4. 24. 접수 제8703호로 D 지분에 관하여 추가 압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지방세징수법 제57조), 압류에 의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4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피고의 1997. 3. 25. 압류등록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의 효력이 미쳐,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별지1.

# 교 부 청 구 서

문서번호: 세무2과-26881　　사건번호: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처리부서: 민사집행과 기타집행3계
참　　조: 배당기일(2016.11.04.)
특이사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시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고액체납 시세징수권이 서울특별시장으로 환원됨(2001.10.01개정)

| 체납자 |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redacted]시 [redacted]구 | 지하층 | |

| 교부청구금액 (부대채권별도) | 일금이백팔십팔만칠천칠백이십원정(₩2,887,720)<br>※ 부대채권 : 아래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 |
|---|---|

체 납 내 역

| 년도 | 세 목 | 과세번호 | 법정기일 | 세 액 | 가 산 금 | 합 계 | 비 고 |
|---|---|---|---|---|---|---|---|
| 1996 | 자동차세 자동차 | | 1996.12.10 | 0 | 79,260 | 79,260 | |
| 1997 | 면허세 일반 | | 1997.01.10 | 36,000 | 1,800 | 37,800 | |
| 1997 | 자동차세 자동차 | | 1997.06.10 | 285,570 | 169,440 | 455,010 | |
| 1997 | 자동차세 자동차 | | 1997.12.10 | 285,570 | 169,440 | 455,010 | |
| 1998 | 면허세 일반 | | 1998.01.10 | 36,000 | 1,800 | 37,800 | |
| 1998 | 자동차세 자동차 | | 1998.06.10 | 285,570 | 172,070 | 457,640 | |
| 1998 | 자동차세 자동차 | | 1998.12.10 | 285,570 | 172,070 | 457,640 | |
| 1999 | 면허세 일반 | | 1999.01.10 | 36,000 | 1,800 | 37,800 | |
| 1999 | 자동차세 자동차 | | 1999.06.10 | 259,610 | 156,370 | 415,980 | |
| 1999 | 자동차세 자동차 | | 1999.12.10 | 259,610 | 156,370 | 415,980 | |
| 2000 | 면허세 일반 | | 2000.01.10 | 36,000 | 1,800 | 37,800 | |
| 체납처분비 | | | | 0 | | 0 | |
| 계 | | | | 1,805,500 | 1,082,220 | 2,887,720 | 총 11건 |
| 당해세계 | | | | | (0 건) | | 0 |

| 배당액입금 의뢰 계좌 | 개설은행 | 우리은행 | 예/적금명칭 | 보통예금 |
|---|---|---|---|---|
| | 계좌번호 | 827-051336-01-001 | | |
| | 예금명의인 | 광진구청(207-83-01582) | | |

상기 본세(세액)기준 300,000원 이상은 매월 1.2% 증가산금이 발생하니 배당(배분)기일에 반영요.(대법원 2012.05 10 선고 2011다44160)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2016 년 10 월 05 일

광진구청장인

소재지: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담당자: <연락처> 전화: 02-450-7465　　팩스: 02-3425-173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별지2.



|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 지 방 세 납 세 증 명 서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 처리기간(즉시) This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immediately |
|---|---|---|
| 004008 | | |

| | | | | |
|---|---|---|---|---|
| 납세자 Taxpayer | 상 호 (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 |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o. | |
| | 성 명 (대표자) Name(Name of the CEO) | |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사 업 의 종 류 Area of business | | 전 화 번 호 Telephone No. | |
| | 주 소 (거소) Address |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 빌라 가동 301호 | |
| | 현 사 업 장(본점)소재지 Current Business Location | | | |
| | 5년내 사업장 (본점) 변동사항 Former Locations in Korea during the past 5 years, if any. | ① | ③ | |
| | | ② | ④ | |

| | | | |
|---|---|---|---|
| 증 명 서 의 사 용 목 적 Purpose of This Certificate | □대금수령 To receive a payment | 대금지급자 Payer | |
| | □해외이주 Emigration | o 해외이주허가번호 : Emigration Permission No.<br>o 해외이주허가일 Date of the Permission | 년 월 일 Year Month Day |
| | ■기타 Others | | |
| 증명서 수량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 1 부 Copy(Copies) | |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 유예종류 Items of Deferrals | 유예기간 Deferral Periods | 과세연도 Taxed Years | 세 목 Taxes | 납부기한 Payment Periods | 세 액 Tax Amounts | 가 산 금 Penalties |
|---|---|---|---|---|---|---|
| | | | 과세사실 | 없음 | | |
| | | | | | | |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8 of the Local Tax Act.

2006 년 05 월 23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of stamp)

| o 구비서류 : Attachments | 수수료 Fee |
|---|---|
| ① 해외이주허가증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br>②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Taxpayer's Identification(Applicable only to non_corporations)<br>③ 법인등기부등본 Copy of Corporation Registration | 1,500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2005 년 06 월 21 일
Period of Validity Year Month Da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 23조(증명서의 유효기간)
Reasons for the period of validity

2006 년 05 월 23 일
Year Month Day

만안구청장 인
Mayor County chief District chief